

제2023-50호 2023년 5월 30일(화)	시  보 여수시	시 정 지 표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5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3-238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 여수시 고시 제2023-239호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 고시 2
- 여수시 고시 제2023-241호 여수시 소호동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4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3-1601호 여수 도시관리계획(유수지) 결정 변경(안) 주민 등의 의견청취 열람공고 6
- 여수시 공고 제2023-1603호 여수 도시관리계획(자산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주민 등의 의견청취 재열람 공고 7
- 여수시 공고 제2023-1608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사항 공고 14
- 여수시 공고 제2023-1620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15
- 여수시 공고 제2023-1623호 도로지정 공고[소라면 덕양리 529-1번지] 18
- 여수시 공고 제2023-1628호 도로지정 공고[돌산읍 평사리 913, 928-68번지] 20
- 여수시 공고 제2023-1629호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2
- 여수시 공고 제2023-1630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사항 공고 41
- 여수시 공고 제2023-1631호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사항 공고 42
- 여수시 공고 제2023-1632호 전문건설업 폐업 공고 43

회 람								
--------	--	--	--	--	--	--	--	--

여수시 고시 제2023-238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인가 고시합니다.

2023. 5. 26.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여수시 신기동 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사업
 - 나. 명 칭: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가. 면 적: 6,238.4㎡(도로 4,452㎡, 공원 1,786.4㎡)
 - 나. 규 모: L=345m, B=11m/L=41m, B=15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 가. 성 명: (주)대국개발 대표 박준수
 - 나. 주 소 : **ㄱ 지정: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1로 52, 117동 202호**
ㄴ 변경: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B동 3층 301호
5. 사업의 기간(변경): **ㄱ 지정: 2021. 4.22. ~ 2023. 5.31.**
ㄴ 변경: 2021. 4.22. ~ 2023. 7.2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게재생략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새로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여수시로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5. 26.

여 수 시 장 (인)

○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내용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효력발생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이동 사유	비고
	별	지		기	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061-659-3355~335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 이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 변경 · 폐지 고시 조서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종화동 462-7	전라남도 여수시 하멜로 72 (종화동)	20230526	20091013	하멜공원으로 연결되는 도로	
건물번호폐지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중산길 85		20230526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 고려	
건물번호폐지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중산길 85-1		20230526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 고려	
건물번호폐지	전라남도 여수시 하멜로 64-2 (종화동)		20230526	20091013	하멜공원으로 연결되는 도로	
건물번호변경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곡길 126-1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곡길 120-5	20230526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 고려	
건물번호폐지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벽수길 15 (봉산동)		20230526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동 646-22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벽수길 15 (봉산동)	20230526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산439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봉두로 57	20230526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둔덕동 504-7, 504-10, 504-11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446 (둔덕동)	20230526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 고려	
건물번호폐지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중산길 85-2		20230526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1421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중산길 85	20230526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 고려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4차)승인 고시

여수시 소호동 945번지 외 8필지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4차)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5. 26.

여 수 시 장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4차) 승인 사항

1. 사 업 명 : 소호동 금호어울림 오션테라스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역삼동)/ (주)케이비부동산신탁
3. 사업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945번지 외 8필지
4. 사업개요
 - 가. 사업면적 : 19,117m²
 - 나. 건축면적 : 7,467.0550m²
 - 다. 연 면 적 : 30,386.8905m²
 - 라. 규 모 : 지하2층·지상4층, 연립주택 10동, 162세대
5. 변경내용
 - 가. 사업기간 변경 : (당초) 2021. 7 .1 ~ 2023. 3. 31.
(변경) 2021. 7. 1. ~ 2023. 6. 30.
 - 나. 경미한 변경(건축,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6. 사업기간 : 2021. 7. 1 ~ 2023. 6. 30.

7. 관계서류를 열람하고자 하시는 분은 여수시 허가과(☎659-4097)에서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공고 제2023-1601호

여수 도시관리계획(유수지) 결정 변경(안) 주민 등의 의견청취 열람공고

여수 도시관리계획(유수지)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5. 26.

여 수 시 장(인)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 유수지 결정 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유수지	유수시설 (빗물펌프장)	여수시 국동 37-553번지 일원	-	증)2,685	2,685	-	

■ 유수지 결정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A	유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수지 신설 - 위치 : 국동 37-553번지 일원 - 면적 : 2,685m² 항만 일부 중복 - 중복면적 1,609m² 도로(중로3-24호선) 일부 중복 - 중복면적 191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동항 주변 증가하는 강우유출량에 대비하기 위한 우수저감 방안으로 방재시설(유수지) 신설

2. 여수 도시관리계획(유수지) 결정 변경(안) 도면 : 게재 생략

3. 열람장소 : 여수시청 도시계획과

4. 공고기간 : 2023. 5.26. ~ 2023. 6. 9.(15일간)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도시계획과(☎061-659-4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공고 제2023-1603호

여수 도시관리계획(자산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주민 등의 의견청취 재열람 공고

여수 도시관리계획(자산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기 공람공고 내용 중 관계부서 협의 및 여수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견 반영 등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재열람 공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5. 26.

여 수 시 장 (인)

1. 도시관리계획(유원지) 결정(변경) 조서

가. 공간시설

1) 유원지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①	자산 유원지	여수시 수정동 30번지 일원	31,100	-	31,100	전라남도 고시 제2009-437호 (2009.11.13.)	

2. 도시관리계획(자산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부지면적 (㎡)	건축규모(㎡)				구성비 (%)	비고
			건축 바닥	연면적				
				계	지상	지하		
합계	기정	31,100.00	6,213.65	34,733.47	22,557.63	12,175.84	100.0	
	변경	-	증)1,781.57	증)16,295.87	증)19,952.22	감)3,656.35	-	
	변경후	31,100.00	7,995.22	51,029.34	42,509.85	8,519.49	100.0	
휴양 시설	기정	10,783.00	5,429.30	32,304.94	20,129.10	12,175.84	34.7	
	변경	감)2,727.42	증)2,052.76	증)18,211.24	증)22,380.75	감)4,169.51	감)8.8	
	변경후	8,055.58	7,482.06	50,516.18	42,509.85	8,006.33	25.9	
운동 시설	기정	-	-	-	-	-	0.0	
	변경	401.48 (23.73)	-	-	-	-	증)1.3 (증)0.1)	
	변경후	401.48 (23.73)	-	-	-	-	1.3 (0.1)	() : 호텔(필로티)
편익 시설	기정	-	-	-	-	-	0.0	
	변경	증)3,228.87 (증)67.00)	-	-	-	-	증)10.4 (증)0.2)	
	변경후	3,228.87 (67.00)	-	-	-	-	10.4 (0.2)	() : 호텔(필로티)
유희 시설	기정	-	-	-	-	-	0.0	
	변경	증)382.36	-	-	-	-	증)1.2	
	변경후	382.36	-	-	-	-	1.2	

구분	부지면적 (㎡)	건축규모(㎡)					구성비 (%)	비고
		건축 바닥	연면적					
			계	지상	지하			
특수 시설	기정	- (3,781.00)	-	-	-	-	0.0 (12.2)	() : 지하동굴, 도로(교각)
	변경	증)1,951.76 (감)2,614.57	증)513.16	증)513.16	-	증)513.16	증)6.3 (감)8.4	
	변경후	1,951.76 (1,166.43)	513.16	513.16	-	513.16	6.3 (3.8)	
관리 시설	기정	6,508.00 (302.00)	784.35	2,428.53	2,428.53	-	20.9 (1.0)	() : 도로(교각)
	변경	감)1,824.19 (증)779.52	감)784.35	감)2,428.53	감)2,428.53	-	감)5.9 (증)2.5	
	변경후	4,683.81 (1,081.52)	-	-	-	-	15.1 (3.5)	
기타 시설	기정	902.00	-	-	-	-	2.9	() : 호텔(필로티), 데크, 주차장
	변경	감) 902.00	-	-	-	-	감)2.9	
	변경후	-	-	-	-	-	0.0	
녹지	기정	12,907.00 (0.00)	-	-	-	-	41.5 (0.0)	() : 도로(교각)
	변경	감)510.86 (증)353.86)	-	-	-	-	감)1.4 (증)1.1)	
	변경후	12,396.14 (353.86)	-	-	-	-	39.9 (1.1)	

* ()는 지하동굴 및 도로(교각), 필로티공간(호텔, 데크, 주차장 등) 중복결정

나. 조성계획(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면적(㎡)					구성비 (%)	비 고	
			부지면적	건축 바닥면적	연면적					
					계	지상	지하			
총 계	기 정	31,100.00	6,213.65	34,733.47	22,557.63	12,175.84	100.0	건폐율 19.98 용적률 72.53		
	변 경	-	증)1,781.57	증)16,295.87	증)19,952.22	감)3,656.35				
	변경후	31,100.00	7,995.22	51,029.34	42,509.85	8,519.49	100.0	건폐율 25.71 용적률 99.71		
휴양 시설	소 계	기 정	10,783.00	5,429.30	32,304.94	20,129.10	12,175.84	34.7		
		변 경	감)2,727.42	증)2,052.76	증)18,211.24	증)22,380.75	감)4,169.51	감)8.8		
		변경후	8,055.58	7,482.06	50,516.18	42,509.85	8,006.33	25.9		
	1-1	관광호텔	기 정	5,826.00	3,999.32	17,577.88	13,625.40	3,952.48	18.7	지하 2층 지상 5층
			변 경	증)2,229.58	증)3,482.74	증)32,938.30	증)28,884.45	증)4,053.85	증)7.2	-
			변경후	8,055.58	7,482.06	50,516.18	42,509.85	8,006.33	25.9	지하 2층 지상 10층
	1-2	콘 도	기 정	2,888.00	1,429.98	14,727.06	6,503.70	8,223.36	9.3	지하 4층 지상 6층
			변 경	감)2,888.00	감)1,429.98	감)14,727.06	감)6,503.70	감)8,223.36	감)9.3	폐 지
			변경후	-	-	-	-	-	-	-
	1-3	휴게공간	기 정	922.00	-	-	-	-	3.0	
			변 경	감)922.00	-	-	-	-	감)3.0	폐 지
			변경후	-	-	-	-	-	-	-
	1-4	휴게공간	기 정	490.00	-	-	-	-	1.6	
			변 경	감)490.00	-	-	-	-	감)1.6	폐 지
			변경후	-	-	-	-	-	-	-
1-5	동백광장	기 정	657.00	-	-	-	-	2.1		
		변 경	감)657.00	-	-	-	-	감)2.1	폐 지	
		변경후	-	-	-	-	-	-	-	
운동 시설	소 계	기 정	-	-	-	-	-	-		
		변 경	증)401.48 (증)23.73)	-	-	-	-	증)1.3 (증)0.1)		
		변경후	401.48 (23.73)	-	-	-	-	1.3 (0.1)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면적(㎡)					구성비 (%)	비 고
				부지면적	건축 바닥면적	연면적				
						계	지상	지하		
편의 시설	2-1	수영장	기 정	-	-	-	-	-	-	-
			변 경	증)401.48 (증)23.73)	-	-	-	-	증)1.3 (증)0.1)	신 설
			변경후	401.48 (23.73)	-	-	-	-	1.3 (0.1)	() : 호텔(필로티)
		소 계	기 정	-	-	-	-	-	-	-
			변 경	증)3,228.87 (증)67.00)	-	-	-	-	증)10.4 (증)0.2)	
			변경후	3,228.87 (67.00)	-	-	-	-	10.4 (0.2)	
	3-1	야외데크	기 정	-	-	-	-	-	-	-
			변 경	증)2,580.12 (증)67.00)	-	-	-	-	증)8.3 (증)0.2)	신 설
			변경후	2,580.12 (67.00)	-	-	-	-	8.3 (0.2)	() : 호텔(필로티)
	3-2	전망데크(1)	기 정	-	-	-	-	-	-	-
			변 경	증)355.09	-	-	-	-	증)1.1	신 설
			변경후	355.09	-	-	-	-	1.1	
			3-3	전망데크(2)	기 정	-	-	-	-	-
			변 경	증)293.66	-	-	-	-	증)0.9	신 설
			변경후	293.66	-	-	-	-	0.9	
유회 시설	소 계	기 정	-	-	-	-	-	-	0.0	
		변 경	증)382.36	-	-	-	-	증)1.2		
		변경후	382.36	-	-	-	-	1.2		
4-1	바다숲 놀이터	기 정	-	-	-	-	-	-	0.0	
		변 경	증)382.36	-	-	-	-	증)1.2		
		변경후	382.36	-	-	-	-	1.2		
특수 시설	소 계	기 정	-	-	-	-	-	-	-	
		변 경	(3,781.00) 증)1,951.76 (감)2,614.57)	증)513.16	증)513.16	-	증)513.16	증)6.3 (감)8.4)		
		변경후	1,951.76 (1,166.43)	513.16	513.16	-	513.16	6.3 (3.8)		
	5-1	해양광장	기 정	-	-	-	-	-	-	-
			변 경	증)894.62	-	-	-	-	증)2.9	신 설
			변경후	894.62	-	-	-	-	2.9	
	5-2	등골광장	기 정	-	-	-	-	-	-	-
			변 경	증)1,057.14 (증)555.18)	-	-	-	-	증)3.4 (증)1.8)	신 설
			변경후	1,057.14 (555.18)	-	-	-	-	3.4 (1.8)	() : 도로(교각)
			5-3	지하등골풍물 거리	기 정	(3,781.00)	-	-	-	-
	변 경	(감)3,169.75)			증)513.16	증)513.16	-	증)513.16	-	() : 지하등골
	변경후	(611.25)			513.16	513.16	-	513.16	(2.0)	
관리 시설	소 계	기 정	6,508.00 (302.00)	784.35	2,428.53	2,428.53	-	20.9 (1.0)		
		변 경	감)1,824.19 (증)779.52)	감)784.35	감)2,428.53	감)2,428.53	-	감)5.9 (증)2.5)		
		변경후	4,683.81 (1,081.52)	-	-	-	-	15.1 (3.5)		
	6-1	도 로	기 정	4,538.00 (302.00)	-	-	-	-	14.6 (1.0)	() : 도로(교각)
			변 경	감)2,073.26 (감)32.88)	-	-	-	-	감)6.7 (감)0.1)	
			변경후	2,464.74 (269.12)	-	-	-	-	7.9 (0.9)	() : 필로티, 데크, 주차장
6-2	주차장	주차 타워	기 정	785.00	-	-	-	-	2.5	
			변 경	감)785.00	-	-	-	-	감)2.5	폐 지
		야외 주차장	기 정	988.00	-	-	-	-	3.2	
			변 경	감)249.12 (증)536.64)	-	-	-	-	감)0.8 (증)1.7)	
		변경후	738.88 (536.64)	-	-	-	-	2.4 (1.7)	() : 도로(교각)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면적(㎡)				구성비 (%)	비 고	
				부지면적	건축 바닥면적	연면적				
						계	지상			지하
기타 시설	6-3	보행로	기 정	-	-	-	-	-		
			변 경	증)317.11	-	-	-	-	증)1.0	
			변경후	317.11	-	-	-	-	1.0	
	6-4	산책로	기 정	197.00	-	-	-	-	0.6	
			변 경	증)966.08 (275.76)	-	-	-	-	증)3.1 (0.9)	
			변경후	1,163.08 (275.76)	-	-	-	-	3.7 (0.9)	() : 도로, 데크
기타 시설	-	벽 천	기 정	902.00	-	-	-	2.9		
			변 경	감)902.00	-	-	-	-	감)2.9	폐 지
			변경후	-	-	-	-	-	-	
녹 지	-	-	기 정	12,907.00	-	-	-	41.5		
			변 경	감)510.86 (증)353.86)	-	-	-	-	감)1.6 (증)1.1)	
			변경후	12,396.14 (353.86)	-	-	-	-	39.9 (1.1)	() : 도로(교각)

* ()는 지하동굴 및 도로(교각), 필로티공간(호텔, 데크, 주차장 등) 중복결정

다. 조성계획(세부시설) 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1-1	관광호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지면적 변경 : 5,826.00㎡→8,055.58㎡ 증) 2,229.58㎡ 건축면적 변경 : 3,999.32㎡→7,482.06㎡ 증) 3,482.74㎡ 건축연면적 변경 : 17,577.88㎡→50,516.18㎡ 증) 32,938.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양시설 일원화 및 관광호텔 내 주차장 조성 등에 따른 관광호텔 증축
폐지	1-2	콘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지면적 : 2,888.00㎡→0㎡ 감) 2,888.00㎡ 건축면적 : 1,429.98㎡→0㎡ 감) 1,429.98㎡ 건축연면적 : 14,728.06㎡→0㎡ 감) 14,728.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양시설 일원화 등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폐지
폐지	1-3	휴게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면적 : 922.00㎡→0㎡ 감) 92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유원지시설 구분 조정 및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폐지
폐지	1-4	휴게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면적 : 490.00㎡→0㎡ 감) 49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유원지시설 구분 조정 및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폐지
폐지	1-5	동백광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면적 : 657.00㎡→0㎡ 감) 65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유원지시설 구분 조정 및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폐지
신설	2-1	수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면적 : 0㎡→401.48㎡(중복 23.73㎡) 증) 401.48㎡(중복 23.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객의 체육 및 여가활동 영위를 위한 수영장 신설
신설	3-1	야외데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0㎡→2,580.12㎡(중복 67.00㎡) 증) 2,580.12㎡(중복 6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유원지시설 구분 조정 및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신설
신설	3-2	전망데크(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면적 : 0㎡→355.09㎡ 증) 355.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유원지시설 구분 조정 및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신설
신설	3-1	전망데크(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면적 : 0㎡→293.66㎡ 증) 293.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유원지시설 구분 조정 및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신설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4-1	바다숲 놀이터	○ 시설면적 : 0㎡→382.36㎡ 증) 382.36㎡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유원지시설 구분 조정 및 조성 계획 변경에 따른 신설
신설	5-1	해양광장	○ 시설면적 : 0㎡→894.62㎡ 증) 894.62㎡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유원지시설 구분 조정 및 조성 계획 변경에 따른 신설
신설	5-2	동굴광장	○ 시설면적 : 0㎡→ 1,057.14㎡(중복 555.18㎡) 증) 1,057.14㎡(중복 555.18㎡)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유원지시설 구분 조정 및 조성 계획 변경에 따른 신설
변경	5-3	동굴 해양문화관	○ 시설명 변경 지하동굴 풍물거리→동굴 해양문화관 ○ 시설면적 : 0㎡(중복:3,781.00㎡)→0㎡(중복 611.25㎡) 감) 0㎡(감) 중복 3,169.75㎡	○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명 및 시설면적 변경
변경	6-1	도 로	○ 시설면적 4,538.00㎡(중복 302㎡)→2,464.74㎡(중복 269.12㎡) 감) 2,073.26㎡(감) 중복 32.88㎡	○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지정 도로 구간 폐지 및 공유수면(구역밖) 통과 노선 개설로 변경
폐지	6-2	주차 타워	○ 시설면적 : 785.00㎡→0㎡ 감) 785.00㎡	○ 관광호텔 내 주차장 조성 등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폐지
		야외 주차장	○ 시설면적 : 988.00㎡→738.88㎡(중복 536.64㎡) 감) 249.12㎡(증) 중복 536.64㎡	○ 기존 관광객 주차수요 충족을 위해 야외주차장 계획
신설	6-3	보행로	○ 시설면적 : 0㎡→317.11㎡ 증) 317.11㎡	○ 안전하고 원활한 시설이용을 위한 가·감속 차로 확보 및 버스정류장 이전에 따른 보행로 개설
변경	6-4	산책로	○ 시설면적 197.00㎡→ 1,163.08㎡(중복 275.76㎡) 증) 966.08㎡(중복 275.76㎡)	○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기존 산책로(오동도-일출정)와 연계한 산책로 추가 개설
폐지	-	벽 천	○ 시설면적 : 902.00㎡→0㎡ 감) 902.00㎡	○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폐지
변경		녹 지	○ 시설면적 : 12,907.00㎡→12,459.44㎡(중복 353.86㎡) 감) 447.56㎡(증) 중복 353.86㎡	○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녹지면적 증가

라. 조성계획 상 내부 도로 결정 변경 조서(변경)

1) 도로 결정(변경) 총괄표

구분	합계			2류			3류			기타			비고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4	1,248	4,587 (288)	1	249	1,955 (231)	1	172	876 (231)	2	827	1,756 (57)	
소로 (지상)	1	249	1,955 (231)	1	249	1,955 (231)	-	-	-	-	-	-	98㎡ (4㎡)
소로 (지하)	1	172	876 (231)	-	-	-	1	172	876 (231)	-	-	-	
보행로	1	114	317	-	-	-	-	-	-	1	114	317	
산책로	1	713	1,439 (57)							1	713	1,439 (57)	

* ()는 입체 교행에 의한 중복결정 면적 / 비고는 구역계 밖 도로(공유수면) 면적

2)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도면번호)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266	수정동 33-1	수정동 6	일반도로	-	-	기존 3-1
변경	소로	2	1	5-9	국지 도로	249	수정동 33-1	수정동 26-1	일반도로	-	-	6-1 (지상)
신설	소로	3	1	4.5-5.5	국지 도로	172	수정동 33-2	수정동 33-1	일반도로 (서비스 차량전용)	-	-	6-1 (지하)
신설	보행로		1	2-4	특수 도로	114	종화동 246-7	종화동 246-7	보행자 전용도로	-	-	6-3
기정	산책로		1	2	특수 도로	100	수정동 332-49	수정동 332-49	보행자 전용도로	-	-	기존 3-2
변경	산책로		1	2	특수 도로	713	수정동 33-2	수정동 26-1	보행자 전용도로	-	-	6-4

3)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도면번호)
소로1-1	소로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위치 : (종점)수정동 6→수정동 26-1 연장 : 266m→249m 감) 17m 면적 : 44,538.00㎡(중복:302㎡)→1,857.93㎡(중복:132.97㎡) 감) 42,680.07㎡(감) 중복 169.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기정 도로(교각) 구간 폐지 및 공유수면(구역부) 통과 노선 개설로 변경 	6-1 (지상)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도면번호)
-	소로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위치 : (종점)수정동 33-2→수정동 33-1 ○ 연장 : 0m→172m 증) 172m ○ 면적 : 0㎡→875.93㎡(중복:136.15㎡ 감) 875.93㎡(증) 중복 136.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지정 도로(교각) 구간 폐지 및 공유수면(구역부) 통과 노선 개설로 변경 	6-1 (지하)
-	보행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위치 : (기·종점)중화동 246-7 ○ 연장 : 0m → 114m 증) 114m ○ 면적 : 0㎡ → 317.11㎡ 증) 3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하고 원활한 시설이용을 위한 가·감속 차로 확보 및 버스정류장 이전에 따른 보행로 개설 	6-3
산책로	산책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 위치 : (기·종점)수정동 4-1 증축 ○ 연장 : 100m → 613m 증) 513m ○ 면적 : 197.00㎡→1,438.84㎡(중복 275.76㎡ 증) 1,241.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기존 산책로와 연계한 산책로 추가 개설 	6-4

2. 공람기간: 2023. 5. 26.(금) ~ 2023. 6. 9.(금)(14일간)

3.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여수시청 도시계획과

4. 관계도서: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5.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에도 열람 사항이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061-659-4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1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내역 -

면허 번호	연장 허가 번호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면적 (ha)	어장 위치	면허기간	연장허가 기 간	수산자원 조성금 (천원)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10314	2023-37	마을어업	24.40	돌산 송도	2013.07.17. 2023.07.16.	2023.07.17. 2033.07.16.	면제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송도어촌계	

문의전화 : 061) 659-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 끝.

2023. 05. 26.

여 수 시 장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 5. 30.

여 수 시 장

1. 신청개요

신청인	점용·사용 장소	목적	면적(㎡)	사용기간
이평화	여수시 만흥동 49-17 지선 공유수면	수상레저사업을 위한 (폰툰) 바지 등 설치	94	2023. 7. 5. ~ 2023. 8. 27.

2. 공람장소, 공람기간

- 공람장소: 여수시 해양정책과
- 공람기간: 2023. 5. 30. ~ 2023. 6. 13.(15일간)

3.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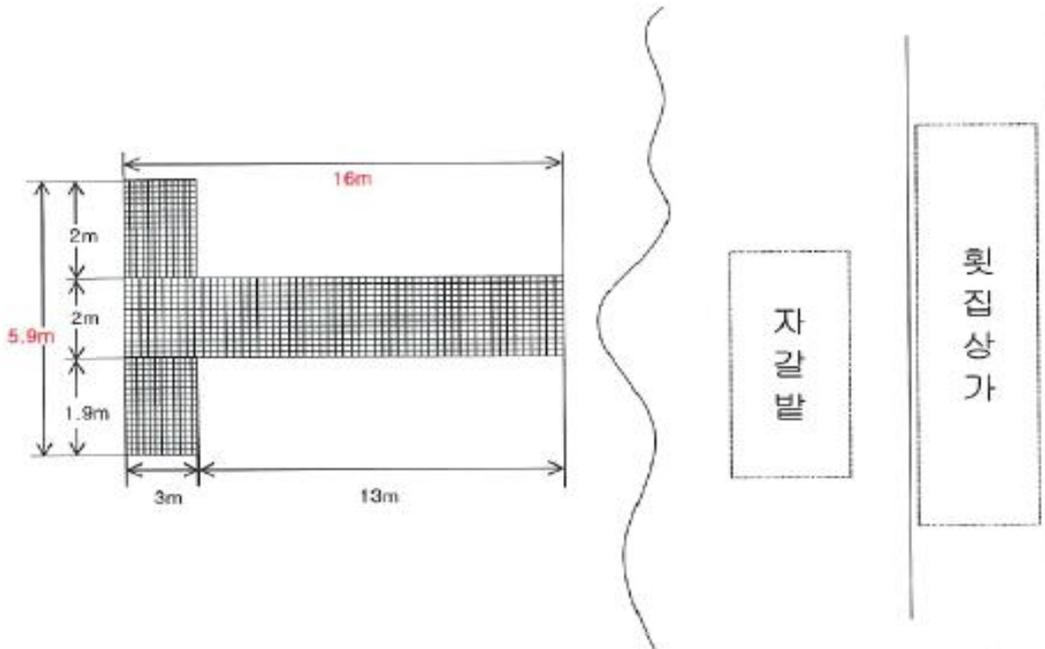
- 제출기간: 2022. 5. 30. ~ 2023. 6. 13.(15일간)
- 제출방법: 의견제출서 서식에 맞추어 제출
- 제 출 처: 해양정책과(여수시 신월로 648, 4층) 또는 전자우편(ds920724@korea.kr)
- 담 당 자: 공유수면관리팀 김동승

4.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정책과(☎659-397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및 구적도



(선경)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의견
	기타

「공유수면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여수시장(해양정책과장)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증질지(80g/m²)]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529-1번지 상의 건축 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2023. 5. 26.

여 수 시 장

1. 위 치 : 소라면 덕양리 529-1번지
2. 도로면적 : 29.0m²
3. 도로길이 및 도로폭 : 현황도에 의함
4.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m ²)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602	29	
	소라면 덕양리	529-1	대	602	29	

5. 관련도서 : 별첨참조

[별첨]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913, 928-68번지 상의 건축 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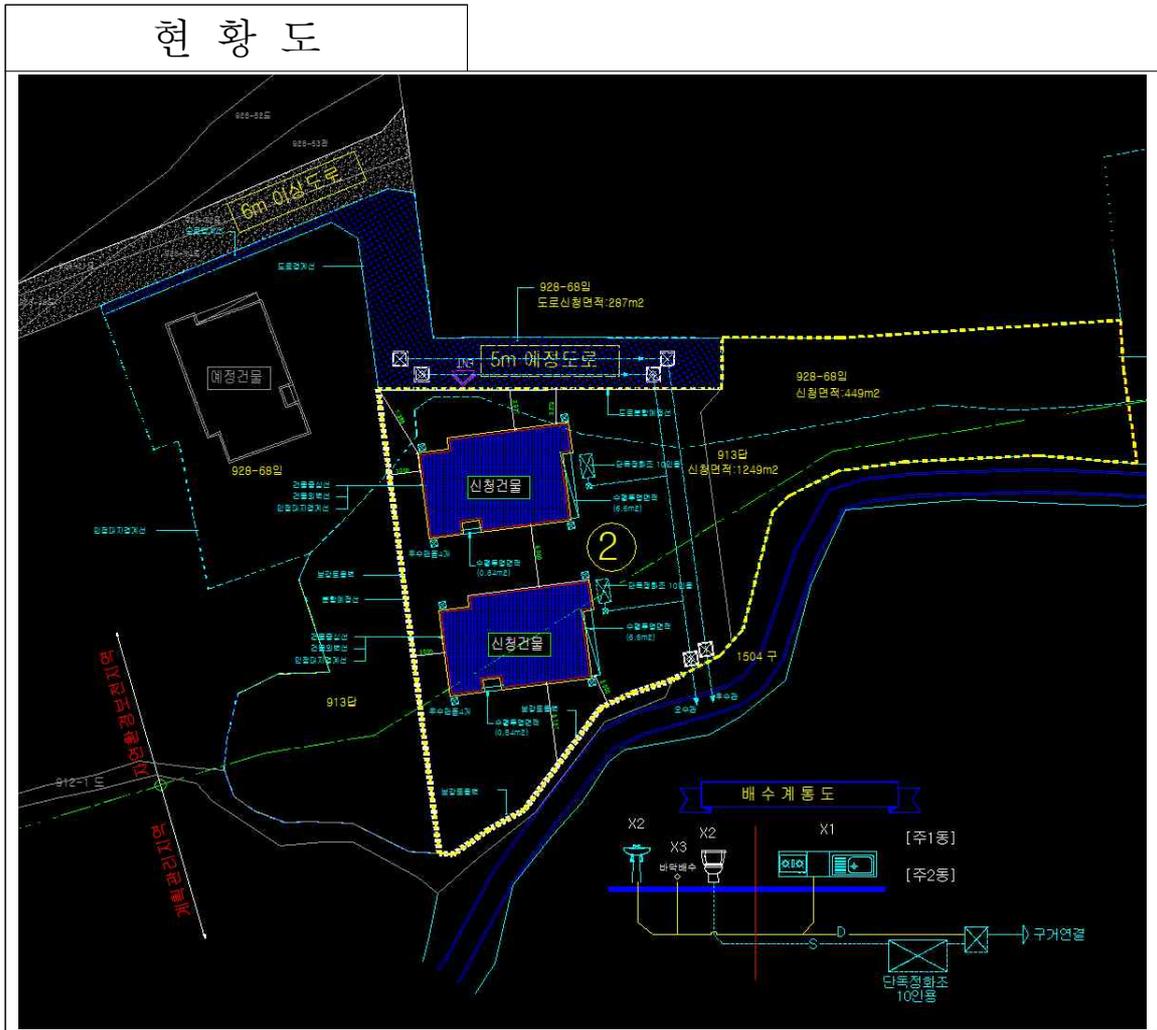
2023. 5. 26.

여 수 시 장

1. 위 치 : 돌산읍 평사리 928-68번지
2. 도로면적 : 287.0m²
3. 도로길이 및 폭 : 현황도에 의함
4.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m ²)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1,513	287	
	돌산읍 평사리	928-68	임	1,513	287	

5. 관련도서 : 별첨참조



공 고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6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 징수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금액 및 감면·반환 등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않아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하고
-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식 일부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강료 징수금액에 대한 기준 규정(안 제8조)
- 수강료 면제 및 감면에 대한 기준 규정(안 제9조)
- 수강료 반환 기준 규정(안 제10조)
- [별표 1의2] 신설, [별표 2] 및 [별표 3] 개정
- 시설 이용 신청서 변경[별지 제1호서식]

3. 입법 예고기간 : 2023. 5. 26. ~ 6. 15.(20일간)

4.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 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2023년 6월 15일까지
-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기관: 여수시장(문화예술과)
 - 주 소 : 우)59675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문화예술과
 - E-Mail : nana01@korea.kr
 - 전 화 : 061-659-2835
 - F A X : 061-659-5855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 조례명 :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반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여수시 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치는 여수시 학동 34-8번지에 둔다.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활문화예술 관련 주민 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3.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학습, 연습, 전시, 공연 등 공간 제공
4.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5. 그 밖에 생활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평 일 : 10:00 ~ 21:00
2. 토요일 : 10:00 ~ 18:00

② 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제5조(시설의 이용신청 등)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센터 시설 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경우 이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이용허가 및 통지) ① 시장은 이용허가를 신청순서에 따라 결정되어 우수시민을 우선으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시장은 센터 이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허가 시 신청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센터 시설 이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용허가 및 이용변경허가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1. 이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원상을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이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이용료 등) 센터 시설 이용자는 별표 1의 이용료를 이용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사용 외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별도 수강료를 별표 1의2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등 면제 및 감면)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이용료 및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료 등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이용 및 수강 개시일 전에 취소 신청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11조(운영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운영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사업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운영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센터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지역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생활문화동호회 대표 등 지역 주민
3. 여수시의회 의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받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나 운영부실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위탁 운영을 정지 또는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례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3. 사업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경우
 4. 센터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센터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배상책임) ① 이용자는 센터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였거나 손해를 입힌 자는 이를 변상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료 기준

구 분	기 준	금 액(원)	비 고
연습실	1시간	3,000	
동아리실	1시간	3,000	
프로그램실	1시간	5,000	
학습실(세미나실)	1시간	3,000	
다목적홀	1시간	7,000	
콘텐츠제작실	1시간	3,000	
스튜디오	1시간	5,000	

※ 시설 사용은 해당기기 이용이 가능한 자 혹은 이용이 가능한 자가 동반된 경우에만 사용을 허가한다.

※ 모든 대관은 운영 시간 내에만 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센터에서 사전에 허가한 경우는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다.

[별표 1의2]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수강료 기준

구 분	기 준	금 액
교육·문화 프로그램	10시간 이하	10,000원
	10시간 초과 20시간 이하	15,000원
	20시간 초과 30시간 이하	20,000원
	30시간 초과	30,000원

※ 1명당 1개월 기준

※ 개별 프로그램 운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봄.

※ 개별 프로그램 운영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각 개월별로 기준을 적용함.

※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재비 및 재료비는 수강생 본인이 부담함.

[별표 2]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 감면 기준

감 면 기 준	감 면 비 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100%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50%
1. 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감면 비율

※ 수강료는 제3호부터 제13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50% 감면비율 적용함.

※ 구비서류: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단체 등의 경우 감면대상자들로 구성된 경우에만 감면할 수 있음.

※ 중복감면은 실시하지 않음.

[별표 3]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

1. 이용료

반 환 기 준	반 환 금 액
1. 국가, 지자체의 행사 또는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사용예정일 1일 이전에 취소신청을 한 경우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당일 또는 그 후 취소신청을 한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공제한 금액반환

2. 수강료

반 환 기 준		반 환 금 액	
1. 국가, 지자체의 행사 또는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3. 프로그램이 폐지된 경우 4. 강사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운영이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5. 수강생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강 개시일 전	전액 반환
		총수강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납부한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수강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전	납부한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총수강시간의 1/2이 지나간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 개시일 전	전액 반환
		수강 개시일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수강료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수강료에 따른 총수강일을 말한다.

※ “총수강시간“이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수강시간을 말한다.

※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운영을 위해, 시설 이용 및 내역 확인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2. 개인정보 수집 방법 및 항목

- 수집방법 : 정보주체 동의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E-mail), 주소, 신청일자, 사용시설, 행사내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여수시 생활문화센터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를 아래의 기간 내에 보유하고 처리합니다.

- 3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일자, 사용시설, 행사내용
- 1년 : 그 외 정보

4.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인 또는 서명)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 변경 신청서				
신 청 인	단 체 명		연 락 처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변경 신청 사항	시 설 명			
	이용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
	변경신청	신청사유 :		
		변경사항 :		
사 용 료				
기 타 서 류				
<p>「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주 소 :</p> <p style="text-align: center;">단체명 :</p> <p style="text-align: center;">대표자 : (인 또는 서명)</p> <p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 margin-top: 20px;">여수시장 귀하</p>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운영을 위해, 시설 사용 및 내역 확인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2. 개인정보 수집 방법 및 항목

- 수집방법 : 정보주체 동의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E-mail), 주소, 신청일자, 사용시설, 행사내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여수시 생활문화센터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를 아래의 기간 내에 보유하고 처리합니다.

- 3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일자, 이용시설, 행사내용
- 1년 : 그 외 정보

4.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인 또는 서명)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이용료 등) 센터 시설 이용자는 별표 1의 이용료를 이용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사용 외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u>별도 수강료를 청구할 수 있다.</u></p>	<p>제8조(이용료 등) ----- ----- ----- ----- ----- <u>별도 수강료를 별표 1의2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u></p>
<p>제9조(이용료 등 면제 및 감면)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u>이용료</u>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p>	<p>제9조(이용료 등 면제 및 감면) ----- ----- <u>이용료 및 수강료</u>----- -----.</p>
<p>제10조(이용료 등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u>이용료</u>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p>	<p>제10조(이용료 등 반환) ----- ----- ----- ----- <u>이용료 및 수강료</u>----- -----.</p>
<p>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p>	<p>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p>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1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내역 -

면허 번호	연장 허가 번호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면적 (ha)	어장 위치	면허기간	연장허가 기 간	수산자원 조성금 (천원)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10312 -1	2023- 38	마을어업	6.00	돌산 평사	2015.12.22. 2023.07.14.	2023.07.15. 2033.07.14.	면제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평사어촌계	
10316	2023- 39	마을어업	127.00	돌산 평사	2013.07.23. 2023.07.22.	2023.07.23. 2033.07.22.	면제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평사어촌계	

문의전화 : 061) 659-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 끝.

2023. 05. 30.

여 수 시 장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내역 -

면허 번호	연장 허가 번호	양식업의 종류 (양식방법)	면적 (ha)	양식장 위치	면허기간	연장허가 기 간	수산자원 조성금 (천원)	양 식 업 권 자		비고
								주 소	성 명	
11450	2023-40	패류양식 (바닥식)	5.00	남면 두라	2013.07.16. 2023.07.15. (10년)	2023.07.16. 2033.07.15. (10년)	-	여수시 남면 두라리	나발어촌계	

문의전화 : 061) 659-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 끝.

2023. 05. 30.

여 수 시 장

전문건설업 폐업 공고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라 신고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건설업의 폐업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폐업 처리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0일

여 수 시 장

1. 폐업대상 업체

상 호	영업 소재지	폐업대상 건설 업종 (등록번호)	법인번호 (주민번호)	폐업일자	폐업사유
동양기계기술 주식회사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로 314-5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여수2019-10-11)	206211-*****	2023.5.26.	경영 어려움

2. 공고 기간: 2023. 5. 30. ~ 2023. 6. 13.(14일)

3. 공고 장소: 여수시 홈페이지 및 시보

4. 기타

본 신고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 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